

「평창군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본 조례안은 2023년 9월 5일 김광성 의원이 발의하고, 2023년 9월 11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차 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임.

1. 제안이유

평창군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옥외행사에 대한 조례안 적용범위(안 제3조)

나. 옥외행사 안전관리 계획수립·시행 준수 책무(안 제4조)

다. 안전관리계획의 신고의무 등(안 제5조)

라. 행사장소 안전점검 실시(안 제6조)

마. 주최자 등에게 협조 요청 및 경찰서장 등 지원요청(안 제7~8조)

바. 안전관리요원 배치(안 제9조)

3.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관내 일정 규모 이상의 다중운집 행사에서의 각종 사고 및 사회적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 안전관리계획 신고 및 안전점검을 의무화 하고,

안전관리 대상에 주최·주관자가 없는 옥외행사를 포함시켰으며,
안전관리요원 배치에 대한 사항을 명문화하였습니다.

○ 현행 안전 관련 법령¹⁾에 따르면

‘1,000명 이상이 운집하는 주최·주관자가 있는 공연·행사’에 한하여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을 의무화하고 있어, 이를 조례로는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소규모 행사’ 등으로 확대하고, 안전점검의 대상으로, ‘주최·주관자가 없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경우’를 포함시켜 입법의 미비로 인한 안전의 사각지대를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사항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 입법례: 전국 132개 지자체, 도 내 4개 지자체

(강원도, 춘천, 원주, 횡성)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공연법」 이하 법령